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1. 8.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2019년부터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의 존치이유를 상실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구미양성평등 기본 조례」, 「구미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구미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관련단체·전문가·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6. 그 밖에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26조(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에 필요한 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 시의원, 여성정책 및 공간정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9조(설치) 양성평등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구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미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세부 계획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과 등록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행계획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제

제7조(협력체제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예방) 시장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2.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 사업
3. 그 밖에 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

소관 실·과		가족보육과
입 안 자	과 장	황 은 채
	팀 장	백 은 영
	담 당 자	주 현 철 (480-6538)